작성방법 1. 본 명세서의 작성대상은 아래와 같습니다. 가. 법인이 ｢법인세법 시행령｣ 제41조제2항제2호에 따라 농･어민(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농업 중 작물재배업･축산업･복합농업, 임업 또는 어업에 종사하는 자를 말하며, 법인은 제외한다) 으로부터 직접 재화를 공급받는 경우 금융회사 등을 통하여 그 대가를 지급하는 거래에 대하여 작성합니다. 나. 법인이 3만원을 초과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그 대가를 ｢법인세법 시행규칙｣ 제79조 제10호에 따라 금융회사 등을 통하여 지급하는 다음의 거래에 대하여 작성합니다. 구분 내용 ① ｢부가가치세법｣ 제61조를 적용받는 사업자로부터 부동산임대용역을 제공받은 경우 ② 임가공용역을 제공받은 경우(법인과의 거래를 제외한다) ③ 운수업을 영위하는 자(｢부가가치세법｣ 제61조를 적용받는 사업자에 한한다)가 제공하는 운송용역을 공급받은 경우(제7호의 규정을 적용받는 경우를 제외한다) ④ ｢부가가치세법｣ 제61조를 적용받는 사업자로부터 ｢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｣ 제110조제4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재활용폐자원 등이나 ｢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｣ 제2조제2호에 따른 재활용가능자원(동법 시행규칙 별표 1 제1호 내지 제9호에 열거된 것에 한한다)을 공급받은 경우 ⑤ ｢항공법｣에 의한 상업서류 송달용역을 제공받는 경우 ⑥ ｢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｣에 따른 중개업자에게 수수료를 지급하는 경우 ⑦ ｢복권 및 복권기금법｣에 의한 복권사업자가 복권을 판매하는 자에게 수수료를 지급하는 경우 ⑧ ｢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｣ 제2조제2호 본문에 따른 통신판매에 따라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경우 2. ｢2. 거래 및 송금내역, 공급자｣는 거래일자 순으로 거래상대방의 인적사항과 거래내역 등을 적습니다. 3. ⑩ 란은 공급받은 재화 또는 용역의 품명, 내용 등을 적습니다. 4. ⑭ 란은 무통장입급, 계좌자동이체, 지로송금시 거래상대방의 계좌번호 또는 지로번호를 적습니다.